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11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신장식・김재원・이기헌

김준형 · 김선민 · 차규근

박은정 • 이해민 • 정춘생

황운하 · 서왕진 · 백선희

강경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 한 사건이 있었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회개원기념일 등) ①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 개원기념일로 한다.

② 헌법수호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국회개원기념일 등) ①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
	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
	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
	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u>한다.</u>
	② 헌법수호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
	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
	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
	<u>로 한다.</u>